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콘텐츠산업 종사자 표준계약서 사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등 〉

■ 손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64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현행법의 내용과 개정안의 발의 배경	3
2.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개념 정의 및 노동법과의 관계 등 (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6
3.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표준보수지침 도입 (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9
4.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및 위반 시 재정지원 배제 (안 제25조의3, 제24조의4 신설)	15
5. 실태조사 실시(안 제25조의5)	21
※ [참고 1] 협회 및 시민단체 의견	24
[참고 2] 유사 입법례	2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손솔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5. 26.

다. 회 부 일 : 2026. 5.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권고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제11호,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현행법의 내용과 개정안의 발의 배경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¹⁾(이하 “현행법”이라 함)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를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²⁾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³⁾, 사용 권고에 그치고 있음.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가 2024년 120,875개로 2020년 99,551개 대비 21,324개(+21.4%) 증가하였고,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도 2024년 688,121명으로 2020년(642,086명) 대비 46,035명(+7.2%) 증가하였음.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콘텐츠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3)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사업체·종사자 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년 대비 '24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99,551	108,628	114,769	118,064	120,875	+21,324 (+21.4%)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642,086	614,734	647,969	665,213	688,121	+46,035 (+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이와 같은 콘텐츠산업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표준계약서가 사용 권고에 그쳐 제작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임.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며, 표준보수지침 마련,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개념 정의 및 노동법과의 관계 등 (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정의하고,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 관계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콘텐츠산업 종사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략)	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11.</u> (생략) ④ (생략)	<u>11.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u>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①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1항제8호 신설),

②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 관계 법률을 이 법(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며(안 제4조제3항 신설),

③ 국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1호 신설).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노동법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국가 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 권익보호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반 법리상 「근로기준법」⁴⁾ 등 노동 관계 법률이 적용되므로, 안 제4조제3항과 같이 별도의 우선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선언적·확인적 의미 외에 별도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조 및 제5조에 대하여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노동환경 개선 사항을 필수 포함하여 중·장기적 정책 수립의 근거와 정부의 보호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나, 안 제4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이미 폭넓게 받고 있으므로, 본 진흥법에서 별도로 노동 관계 법률과의 우선순위 관계를 명시할 입법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표준보수지침 도입

(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보수의 기준 등에 관한 ‘표준보수지침’을 마련·보급·권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생략) <u><신설></u>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③ (생략) <u><신설></u>	제25조의2(표준보수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적정한 보수(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정보수의

현행	개정안
	<u>기준,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표준보수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을 위하여 시중 노임단가,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보수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u> <u>③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표준보수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 방법, 제2항에 따른 적정보수금액의 조사·산정의 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인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로 하여금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경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또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적정한 보수(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정보수의 기준,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표준보수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개정안은 기존의 단순 권고를 넘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핵심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고, 적정 보수의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정한 표준보수지침을 도입함으로써 콘텐츠산업 현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종사자의 정당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민법」의 근간인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의 형태와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⁵⁾에만 예외

적으로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됨. 개정안과 같이 민간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계약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재정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표준보수지침 마련과 관련하여, 콘텐츠산업은 그 범위가 넓고 개별 산업별로 노동환경 및 형태 등이 다르므로, 일반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유사 입법례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⁶⁾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산업은 미술, 음악, 공연 등 다른 분

5)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야와 달리 영화 근로자(연출, 촬영, 조명 등)가 감독과 제작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하는 경우가 많고, 월급, 주급, 시간당 임금 등의 형태로 단가 기준을 마련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는바, 필요시 개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5조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의무화는 개별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헌법 및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25조의2에 대해서는 표준보수지침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콘텐츠산업의 광범위성과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진흥법(일반법)으로 일괄 강제하기보다는 향후 노사정 협의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법 체계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계약·보수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① 안 제25조제2항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위반 시 재정지원 배제라는 제재가 수반⁷⁾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적정 보수의 기준을 담은 표준보수지침 마련 시 노사정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산업별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7) 재정지원 배제에 대해서는 안 제25조의4 신설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에서 후술하고 있음.

있다고 봄.

한편,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등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⁸⁾

8) 자세한 내용은 “[참고] 협회 및 시민단체 의견” 참조

4.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및 위반 시 재정지원 배제 (안 제25조의3, 제24조의4 신설)

개정안은 ① 콘텐츠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② 콘텐츠사업자가 임금·계약금액 체불시,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또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시에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3(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5조의4(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u>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u> 2. <u>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u> 3. <u>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u>

개정안은 (1)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또한, 개정안은 (2)-①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 (2)-② 안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③ 안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함)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5조의4 신설).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 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사업자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과

투자 배제라는 강력한 제재를 연계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건강권과
정당한 노동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
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5조의3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그 특성상 기계·기구, 폭
발, 전기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산업안전보건법」⁹⁾상 안전·보건조치

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음. 개정안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¹⁰⁾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는 개념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 내용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이전에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둘째, 안 제25조의4는 임금체불 의무위반 등 발생 시 재정지원 배제를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배제의 기간·범위, 재량행사의 기준, 처분 전 의견청취 기회 부여 등 절차적 보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재정지원 배제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재량권

10)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행사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보장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봄.

특히, 「행정절차법」 11)에 따른 의견청취는 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재정지원 배제가 위 조항에 명확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문 등의 절차를 함께 보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봄.

셋째,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에도 재정지원을 배제하도록

11)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재정지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산업은 과거 장시간 일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여¹²⁾ 무제한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방지하고자 표준계약서 제도와 미사용 시 재정지원 배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개별 산업별로 노동환경 및 관행이 상이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제도를 일반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경우 개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필요시 개별산업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5조의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르별 현장 특성을 고려해 진흥법에는 의무 부과와 지원 근거만 선언적으로 두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향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25조의4에 대해서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재정지원 배제는 객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나, 현재 표준계약서 의무화가 부적절하고 장르별 안전조치의 판단 기준도 부재하여 현장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프레시안(2018), 『열정페이 요구한 부산국제영화제...체불임금만 1억원』

5. 실태조사 실시(안 제25조의5)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실태,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 적정보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콘텐츠산업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5(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2.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 3. 제25조의2에 따른 적정보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4. 제25조의3에 따른 콘텐츠산업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보건 조치 현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콘텐츠사업자 및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현행	개정안
	<u>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개정안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 적정보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콘텐츠산업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해당 조사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③ 이 조사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자료 제출의 이행 강제력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실태조사 사항 중 하나인 안 제25조의2에 따른 적정보수금액의 기준은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콘텐츠사업자 등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보수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현행법상으로 이미 가능하며¹³⁾, 표준보수지침 및 적정보수금액 조사는 필요시 개별법에서 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보건조치 현황의 경우 개별 산업 현장에 맞게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후에 필요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① ~ ③ (생략)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참고 1

협회 및 시민단체 의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사)한국방송 영상제작사협회 (‘26. 6. 1.)	-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2항 - ‘콘텐츠사업자’를 ‘콘텐츠사업자(원발주처 포함)’으로 변경 필요 - 제작사의 경우 우선, 원청(방송사 또는 플랫폼)과의 거래관계에서부터 표준계약의 실질내용(적정단가, IP배분 또는 재방사용료 등) 적용 및 사용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함 - 제25조의2(표준보수지침) 제3항 - ‘콘텐츠사업자’를 ‘콘텐츠사업자(원발주처 포함)’으로 변경 필요 - 표준보수지침 마련시 원청과 제작사간의 거래관계부터 인건비성 항목의 등급별 최저선 설정과 매년 물가인상률 반영 및 공표가 필요
(사)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26. 6. 1.)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안 제25조제2항) - 드라마 제작현장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며, 작가·감독·촬영·미술·음악 등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상당수 인력이 프리랜서 또는 단기 계약 형태로 활동하므로 모든 계약관계를 획일적인 표준계약서로 규율할 경우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의 취지는 유지하되, 직군·업무별 특성 고려한 다양한 계약 방식을 인정하고, 필수 보호사항 중심으로 운영 필요 - 표준보수 및 적정보수 산정(안 제25조의2) - 적정한 보수체계 확립 필요하나, 드라마 제작은 작품 규모와 장르, 편성 형태, 투자 규모에 따라 제작비 수준이 크게 달라짐 - 표준보수지침이 강제적 기준으로 작용하면 제작비 부담 증가로 인해 신규 제작 감소, 인력 채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 보수지침은 권고 기준으로 운영하고, 제작 규모와 직무 특성에 따른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안 제25조의3) - 드라마 제작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나, 촬영장 안전사고 예방 책임을 외주제작사에만 집중할 경우 현실적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의무 부과 시, 원청 사업자인 방송사나 OTT 플랫폼의 책임·역할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 비용이 제작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

	• 재정지원 사업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안 제25조의4) - 드라마 제작사는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운영되며 투자금 집행 지연, 편성 변경, 해외 판매 차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기도 하는데, 경미한 위반 및 단순 행정착오까지 재정지원 배제 사유가 될 경우 오히려 제작 중단과 추가적인 체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고의적·반복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필요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개선 기회 부여가 필요 • 종합의견 - 종사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노동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과 책임이 제작사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탄력적 적용, 표준보수지침의 권고 기준 유지, 안전관리 책임 공동부담, 단계적 제재 체계 도입 등 노동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유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 입법 필요
인터넷기업협회 ('26. 6. 4.)	•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채용, 근로조건, 안전·보건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친 별도의 규율체계 마련은 타 법령과 중첩될 가능성 높음 - 우리 법체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일반법 및 특별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본 개정안은 '타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표준계약서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등 유사 규제를 중첩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규제 비례성 측면에서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 • 기본법 성격과 합치되지 않는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산업 육성 정책, 기반 조성, 협력 촉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목적의 기본법 - 본 개정안은 '노동관계 규제'와 '근로자 보호' 영역을 직접 규제하고 있어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률의 본 목적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오히려 상충할 수 있음 • 표준보수지침(안 제25조의2)은 민간의 계약자유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음 - 형식적으로는 권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공적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과 결합될 경우 사실상 준강행규범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 및 가격 결정 기능을 저해하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음

한국방송협회 (‘26. 6. 5.)	• 검토의견: 신중검토 •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과의 해석상 혼선이 우려됨 - 종사자의 핵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 명확성이 떨어지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2219065)과 정의가 달라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진흥이 아닌 규제에 있어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 알 수 없는 등 법률 수범자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 - 또한 종사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본래 목적보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의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노동법 체계와 충돌·중복될 수 있음 - 적정보수는 「근로기준법」 등에, 안전·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에게 별도 의무를 부과하여 이중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노동법령과 중복·충돌될 수 있음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미사용에 따른 재정지원 배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임 -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채용’은 근로자를 전제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장 종사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출연계약, 집필계약 등 콘텐츠산업 내 다양한 형태의 계약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과 어울리지 않음. 그럼에도 표준계약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제작환경을 경직시키고, 콘텐츠 사업자들의 효율성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가 임의로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것. 투자조합은 민간투자자와 공공출자가 결합된 구조일 수 있는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투자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결국 산업 경쟁력과 적응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 더욱이 재정지원 배제 기간,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위반 경중과 관계없이 과도한 제재 부과 가능성이 있고, 중소 사업자에게는 사업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 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사업자 및 행정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 표준보수지침은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강제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콘텐츠산업에는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고, 직군별 직무 성격과 보수체계가 크게 상이해서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가능한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 - 표준보수지침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결국 시장·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현장의 니즈와는 괴리감 있는 내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음 - 형식적으로는 표준보수지침에 강제력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미통위 등에서 표준보수지침 준수여부를 재허가 등에 반영하여 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지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임금·계약금액 체불을 재정지원 배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 및 과도한 행정개입에 해당함 - 임금은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재 가능하므로 그 실효성이 없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행정제재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과도한 조사권 부여는 권한 남용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우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사실상 콘텐츠 사업자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정보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권한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와 정보 요구권이 상당히 오·남용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기본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및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함 - 그러나 개정안은 다양한 규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여 법의 기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 시민단체 의견

시민단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26. 6. 9.)	• 안 제25조제2항(표준계약서) - 현재 1일 최대 노동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동시간 포함 20시간 가까이 노동하는 환경이 많음. 1일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최대 12~14시간까지 연장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계 설정 필요 • 안 제25조의2(표준보수지침) - 단순한 보급·권장으로는 현장 도입이 안되므로 확실한 처벌 및 반대급부가 있어야 함 • 안 제25조의4(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확실한 처벌 및 반대급부가 있어야 함

참고 2

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1093호)	•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 -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1066호)	•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